

## <약제급여목록표 고시 [별표1]의 별지3, 별지4에 대한 안내>

### □ 안내사항

☞ 별지3, 별지4의 리베이트 약제로 인한 상한금액 조정 130 품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10.5일 시행전 집행정지가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이번 처분의 사유

- 보건복지부 고시(제2017-133호, '17.7.25) 유통질선문란약제 약가인하 행정 처분과 관련, 약가인하 취소소송(2017구합72898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(서울 행정지방법원, '17.7.25)) 진행중 이며,
- 소송 진행 중 변경 공소장 내역을 인지함에 따라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처분을 진행함

#### ○ 집행정지 예상의 근거

- 당초 처분이 현재 집행정지 중에 있으므로, 당초 처분의 변경 처분인 이번 처분도 집행정지가 예상됨

#### ○ 집행정지가 예상됨의 의미

- 동 고시의 시행일인 10.5일 이전에 집행정지가 예상되므로 해당 130품목은 변경 전 상한금액을 계속해서 적용함

#### ○ 기타

- 동 처분이 집행정지 되는 경우 시행일인 10.5일 이전에 공고 예정

※ 문의 : 보험약제과 박정수 주무관 (044-202-5754)